

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60일
신청인	성명(법인, 개인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소 (전화번호 :)		
1. 결정신청대상	[] 가설건축물 및 피뢰설비 [] 안테나 [] 타워크레인 [] 레이저광선 [] 건축물 [] 그밖의 구조물		
2. 주 소	건축물·구조물 등을 설치하려는 주소(해당 부지의 위도와 경도를 같이 표시합니다)		
3. 위 치	건축물·구조물 등을 설치하려는 부지의 좌표[부지의 좌표를 백분의 일초 단위까지 적고 기준좌표계(WGS84, GRS80) 별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합니다]		
4. 부지고도	건축물·구조물 등을 설치하려는 부지의 해발 높이(지반고와 계획고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)		
5. 설치내용	설치하려는 건축물·구조물 등의 최고 높이 및 면적(건축물·구조물 등의 높이보다 높은 필로티, 계단실, 승강기, 굴뚝, 저수조, 안테나 등의 건축설비 등 그 밖에 구조물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)		
6. 구 조	설치하려는 건축물·구조물 등의 구조 [] 안테나 [] 타워크레인 [] 건물 [] 전선 [] 성토 [] 기타		

「공항시설법」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기 건축물·구조물에 대하여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1. 「공항시설법 시행규칙」 제26조에 따라 지정·고시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 기관이 작성한 항공학적 검토 결과보고서 2. 2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